보험용어 해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계약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또는 매년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0801-10902606-15564637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로, 추가납입보험료의 총납입한도는 해당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함)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함

0801-10902606-15564637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0801-10902606-15564637

0801-10902606-15564637

주요내용 요약서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계약취소

계약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무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해 보험계약이 다시 효력을 갖더라도,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0801-10902606-15564637

계약 전·후 알릴 의무

①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함)을 하셔야 합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②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공시이율 관련

공시이율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sungfire.com)를 통해 공시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마이뷰티플라이프II(1303.1)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801-10902606-15564637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0801-10902606-15564637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 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

①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 수령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20%, 지방소득세 제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금수령요건 >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 55세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연금수령한도 >

$$\text{연금한도액}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주)})} \times 1.2$$

주)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 연금지급기간 >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이상
최소연금 지급기간	10년이상	9년이상	8년이상	7년이상	6년이상	5년이상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0801-10902606-15564637

0801-10902606-15564637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후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상
최소연금 지급기간	10년이상	9년이상	8년이상	7년이상	6년이상	5년이상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적용세율: 5% ~ 3%) 할 수 있으며,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15%, 지방소득세 제외)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4.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5. 계약자의 해외이주
6. 계약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④ 제3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사망일로부터 계약이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 해지 또는 계약승계를 신청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 해당일로 연금직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0801-10902606-15564637

⑦ 본 조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0801-10902606-15564637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지환급금은 연금저축공시이율Ⅰ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추가납입여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마이뷰티플라이프II(1303.1)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801-10902606-15564637

0801-10902606-15564637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마이뷰티플라이프II(1303.1) 주요내용

● 문답식 상품해설 (Q & A)

0801-10902606-15564637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마이뷰티플라이프II(1303.1)의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는 무엇인가요?

A) 보험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후부터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납입일시중지로 인해 연장된 납입기간은 제외) 내에서 1회 신청당 12개월(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함)을 한도로 최고 3회까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기본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중지기간에는 계약의 유지를 위해 기본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에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보험료(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를 공제하므로 실제 해지환금금 및 연금액은 최초예시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마이뷰티플라이프II(1303.1)의 불입한도 및 소득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불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고, 소득공제한도는 연간 불입액(특별약관보험료 제외)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퇴직연금보험계약자 납입분 포함하여 400만원 한도)입니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마이뷰티플라이프II(1303.1)에 가입하셨다가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의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A)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연금외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0801-10902606-15564637

□ (해지환급금 - 실제소득 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과 연금수령액 중 큰 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만, 계약자의 사망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15%(지방소득세 별도)의 기타소득세가 부가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분리과세) 됩니다. 세부 사항은 동 상품의 약관 참조하시기 바

0801-10902606-15564637

랍니다.

※ 상기의 세제 관련사항은 '12년 3월 현재 세제관련법령에 따른 내용으로 향후 세제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마이뷰티플라이프||(1303.1) 불입완료 후 연금 수령할 때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0801-10902606-15564637

A)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단,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text{연금 수령한도}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재원 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주)})} \times 1.2$$

주) 가입자가 연금을 최초로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함

연간 연금수령액은 1,200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마이뷰티플라이프||(1303.1)의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계약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나요?

A) 연금저축손해보험의 가입자가 사망하고 그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의 사망일부터 승계된 것으로 간주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소 납입요건, 연금수령한도의 연금수령연차 등은 최초 가입자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상기의 세제 관련사항은 '13년 3월 현재 세제관련법령에 따른 내용으로 향후 세제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801-10902606-15564637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마이뷰티플라이프||(1303.1)에서 보험계약자가 수령하는 연금외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이 있는데 이는 무엇인가요?

A)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회사가 운영하여 이익금이 발생한다면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고,

0801-10902606-15564637

이를 연금지급시기에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금지급시기에 수령하게 되는 것은 연금 + 증액연금 + 가산연금입니다.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액연금	가산연금
연금개시일까지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시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연금개시후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시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 가입자격제한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마이뷰티플라이프II(1303.1)은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입보험료 한도는 최고 월납 150만원(3월납 450만원, 6월납 900만원, 연납 1,800만원)이하로 합니다.

□ 상품구조

<table>
<tr><td>납입기간</td><td>5년, 7년, 10년, 15년, 20년, 전기납(55세납~80세납)</td></tr>
<tr><td>납입주기</td><td>기본보험료 : 월납, 3개월납, 6월납, 연납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td></tr>
<tr><td>연금지급기간</td><td>5년 ~ 25년

다만,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table>
<tr><th>연금지급 개시시점</th><th>최소연금 지급기간</th></tr>
<tr><td>55세</td><td>10년이상</td></tr>
<tr><td>56세</td><td>9년이상</td></tr>
<tr><td>57세</td><td>8년이상</td></tr>
<tr><td>58세</td><td>7년이상</td></tr>
<tr><td>59세</td><td>6년이상</td></tr>
<tr><td>60세이상</td><td>5년이상</td></tr>
</table>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td></tr>
</table>

0801-10902606-15564637

<table>
<tr><td></td><td>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table><tr><th>연금지급 개시시점</th><th>최소연금 지급기간</th></tr><tr><td>(가입후)5년</td><td>10년이상</td></tr><tr><td>6년</td><td>9년이상</td></tr><tr><td>7년</td><td>8년이상</td></tr><tr><td>8년</td><td>7년이상</td></tr><tr><td>9년</td><td>6년이상</td></tr><tr><td>10년이상</td><td>5년이상</td></tr></table>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td></tr>
<tr><td>가입나이</td><td>만18세 ~ 최고 74세(연금지급개시나이-6세)</td></tr>
<tr><td>연금지급개시나이(A)</td><td>만 55세 ~ 80세</td></tr>
<tr><td>연금지급방법</td><td>매월, 매3월, 매6월, 매년</td></tr>
</table>

▷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계약일부터 만(A)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후부터 연금지급 기간까지

□ 보험료 납입한도

계약시점에 납입주기에 따라 계속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됨

① 기본보험료 : 기본계약 기본보험료는 최고 월납 150만원(3개월납 450만원, 6개월납 900만원, 연납 1,800만원)으로 하며, 최저한도는 저축성보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운용하되, 월납 5만원(3개월납 15만원, 6개월납 30만원, 연납 60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②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승낙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해당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함)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합니다.

0801-10902606-15564637

주)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합니다.

□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후부터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납입일시중지로 인해 연장된 납입기간은 제외) 내에서 1회신청당 12개월(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함)을 한도로 최고 3회까지 보험료납입의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이 중지된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납입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기본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보험료 납입기간을 5년납 또는 전기납으로 한 경우
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3. 신규로 신청하는 납입중지기간과 이미 사용한 납입중지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③ 납입중지기간에는 대체보험료를 기본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에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합니다. 단, 수금비는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공제합니다.

④ 납입중지기간이 종료되거나 대체보험료의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중지기간의 종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중지기간 종료후 최초로 다가오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대체보험료 : 기본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의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 상품의 특이사항

① 이 상품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기본계약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이 보험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로 부리하여 드리며 이외에 배당금에 의한 증액연금, 가산연금을 더하

0801-10902606-15564637

여 드립니다.

③ 기본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이하「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부가되는 특별약관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0801-10902606-15564637

● 보험료 산출기초

□ 보험료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그리고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예정이율

예정이율이란?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금리확정형보험상품과 금리연동형보험상품의 차이점

ㅇ 금리확정형보험
보험회사가 적립순보험료를 확정금리로 부리·적립하여 적립부분 환급금을 돌려주는 보험

ㅇ 금리연동형보험
보험회사가 적립순보험료를 자산운용수익률, 시장금리 등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로 부리·적립하여 적립부분 환급금을 돌려주는 보험

0801-10902606-15564637

0801-10902606-15564637

연금저축 공시이율Ⅰ란?

이 보험에 적용되는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하「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라 합니다)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의 평균)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연금저축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결정하며, 연금저축 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공시이율 산출방법 요약]

→ 연금저축 공시기준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 지표금리수익률) / 2

※ 지표금리수익률은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마이뷰티플라이프Ⅱ(1303.1)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은 연복리 3.25%입니다. 이 보험의 적립순보험료는 "이 보험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에 의해 연동되어 적립되며, 2013년 2월 현재 적용이율은 연복리 4.1%입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하에는 연복리 2.5%, 10년 초과에는 연복리 1.5%로 합니다.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적용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연금저축 공시이율Ⅰ로 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예정사업비율

예정사업비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중 일정비율을 사업비로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0801-10902606-15564637

● 사업비 등 공제금액 안내표

□ 기본비용 및 수수료

[기준 : 남자 40세(60세 연금개시,20년지급), 납입기간 20년만기, 월납 20만원]

0801-10902606-15564637

구 분	목 적		시기	비 용
보험관계 비용	계약 체결 비용	판매보수	매월	10년이내 : 기본보험료의 1.02%(2,030원)
		유지보수		7년이내 : 기본보험료의 0.60%(1,20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이내 : 기본보험료의 4.60%(9,200원)
연금수령 기간중비용	연금수령기간중의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5%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아래도표 참조※

※ 해지공제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해지공제금액 (만원)	17.9	15	12	9	6	3	0	0
해지공제비율	7.46%	3.13%	1.67%	0.94%	0.50%	0.21%	0.00%	0.00%

주) 해지환급금에서 해지시 공제하는 금액

□ 추가비용 및 수수료

구 분	목 적	시기	비 용
추가납입 보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추가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3.0%

□ 유지기간별 사업비 수준

0801-10902606-15564637

[기준 : 남자 40세(60세 연금개시,20년지급), 납입기간 20년만기, 월납 20만원]

7년 이내	7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과 20년 이내
12,430원(6.22%)	11,230원(5.62%)	9,200원(4.6%)

0801-10902606-15564637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 저희 회사에서는 이 상품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자배당의 종류에는 이자율차배당, 사업비차배당, 위험률차배당이 있으며, 이를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증액연금 : 연금지급개시일까지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시 가산지급

가산연금 : 연금지급개시후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시 가산지급

□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의 배당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자율차배당 : 전보험연도말 해지환급금식 책임준비금 × 이자율차배당률

= 전보험연도말 해지환급금식 책임준비금 × (이자율차배당 기준율 - 예정이율)

② 사업비차배당 : 연간 유지비 × 사업비차배당기준율

③ 위험률차배당 : 연간 위험보험료 × 위험률차배당률

단, 위험률차배당률 : 상품별이재차익률(이재차손익/위험보험료) × 위험률차배당기준율

□ 과거5년간의 배당률 및 배당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FY'07		FY'08		FY'09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이자율차배당	연금	5.3%	14,731	5.6%	9,640	4.9%	21,662
	연금신공시	-	-	5.8%	189	5.3%	397
사업비차배당		40%	6,030	21%	3,804	8%	2,212
위험률차배당		80%	2,239	80%	1,831	50%	1,206
총 계		-	23,000	-	15,463	-	25,477

구 분		FY'10		FY'11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이자율차	연금	5.0%	31,448	5.2%	40,243

0801-10902606-15564637

배당	연금신공시	5.3%	1,309	5.2%	1,377
사업비차배당		5%	1,909	3.3%	1,599
위험률차배당		35%	775	14.6%	787
총 계		-	35,441	-	44,006

주)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은 FY'12 기준 4.0%입니다.

0801-10902606-15564637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손해보험은 보장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금 재원으로의 차감이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마이뷰티플라이프II(1303.1)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801-10902606-15564637

0801-10902606-15564637

0801-10902606-15564637

보통약관

0801-10902606-15564637

0801-10902606-15564637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마이뷰티플라이프II(1303.1) 보통약관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0801-10902606-15564637

제1조(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보험계약」은「계약」,「보험계약자」는「계약자」,「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예정이율>

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0801-10902606-15564637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0801-10902606-15564637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

0801-10902606-15564637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문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연금지급개시시기, 연금지급기간
2. 기본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3. 기본보험료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의 연금지급개시시기, 연금지급기간 및 연금지급형태를 연금지급 개시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연

0801-10902606-15564637

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거나 2013년 3월 1일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가) 이전신청일이 속한 년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나) 계약이전 후 기존계좌와 통합을 하는 경우
다) 계약을 나누어(금액분할) 이전하는 경우
라) 압류·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마)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특별약관포함)
- 보험사고 발생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특별약관포함)
⑥ 계약자가 이미 실효된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된 후에 한하여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이하「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20%, 지방소득세 제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0801-10902606-15564637

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금수령요건 >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 55세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0801-10902606-15564637

< 연금수령한도 >

$$\text{연금 한도액}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주)})} \times 1.2$$

주)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 연금지급기간 >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이상
최소연금 지급기간	10년이상	9년이상	8년이상	7년이상	6년이상	5년이상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후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상
최소연금 지급기간	10년이상	9년이상	8년이상	7년이상	6년이상	5년이상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0801-10902606-15564637

0801-10902606-15564637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항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적용세율: 5% ~ 3%) 할 수 있으며,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0801-10902606-15564637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15%, 지방소득세 제외)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4.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5. 계약자의 해외이주
6. 계약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⑤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사망일로부터 계약이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 해지 또는 계약승계를 신청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본 조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나이에 도달하는 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하며 이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

0801-10902606-15564637

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시행령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8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 나이가 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등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등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예시>
·39년 7개월에 가입시 가입시점의 보험나이는 40세, 만 나이는 39세임

제9조(특별계정의 운용)

회사는 1개이상의 특별계정(2개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

제10조(보험료의 구성과 납입한도)

① 이 계약의 보험료는 다음에 정하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1.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년, 매6개월, 매3개월 또는

0801-10902606-15564637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와 달리 계약승낙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납입한도 내에서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②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연간 1,800만원을 한도(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납입한도에 따라 계약승낙일부터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2조(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납입일시중지로 인해 연장된 납입기간은 제외) 내에서 보험료납입의 일시중지(이하「납입일시중지」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이 중지된 기간(이하「납입중지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보험료 납입기간을 5년납 또는 전기납으로 한 경우
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3. 신규로 신청하는 납입중지기간과 이미 사용한 납입중지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해당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중지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

0801-10902606-15564637

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납입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기본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납입중지기간은 기본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제6항에서 정한 대체보험료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이내로 하고, 1회 신청당 12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개월 수 포함)을 최고한도로 하며, 납입일시중지 신청횟수는 3회를 최고한도로 합니다. 단, 납입중지기간 중 제6항에서 정한 대체보험료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때부터 납입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납입기일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자는 납입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중지기간은 그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납입기일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납입중지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대체보험료(납입주기별 기본보험료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이하「대체보험료」라 합니다)를 기본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에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합니다. 단, 수금비는 납입중지기간의 종료 후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

⑦ 회사는 제1항에서 신청한 납입중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6항에서 정한 대체보험료의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중지기간의 종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중지기간 종료후 최초로 다가오는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

0801-10902606-15564637

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하는 대출이율이며,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

0801-10902606-15564637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이하「부활(효력회복)보험료」라고 합니다)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6조(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보험료에서 정해진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 보험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하「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라 합니다.【별표1】연금저축 공시이율Ⅰ에 관한 사항 참조)로 하며,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매

0801-10902606-15564637

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17조(연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한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금액을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하여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계약자(계약자 사망시에는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월, 3개월, 6개월 또는 년 단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은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제16조(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 변경되는 경우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④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제18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회사는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16조(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계약건별로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하에는 연복리 2.5%, 10년 초과에는 연복리 1.5%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0801-10902606-15564637

제19조(계약자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적립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범위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매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1.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2. 연금지급개시일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17조(연금의 지급)에서 정한 연금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증액연금」이라 합니다)
3.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매회 연금에 더하여 드립니다.(이하「가산연금」이라 합니다)

③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20조(소멸시효)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료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제21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등이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등이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

0801-10902606-15564637

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등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2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17조(연금의 지급)의 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0801-10902606-15564637

제23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연금저축 공시이율Ⅰ+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린 경우의 해지환급금 또는 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해지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2. 연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간은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적용하고, 보험기간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은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0801-10902606-15564637

제24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

0801-10902606-15564637

니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25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연금저축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사유로 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계약자가 제1항의 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차감은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0801-10902606-15564637

제5장 분쟁조정 등

제26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801-10902606-15564637

제2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2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

0801-10902606-15564637

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2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3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0801-10902606-15564637

0801-10902606-15564637

0801-10902606-15564637

0801-10902606-15564637

별 표

0801-10902606-15564637

0801-10902606-15564637

【별표1】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에 관한 사항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수익률을 산술 평균하여 산출된 연금저축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결정하며, 연금저축 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 내에서 정함

- 연금저축 공시기준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 지표금리수익률) / 2

①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투자수익(「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비용(「투자지출률」)을 차감한 것으로 직전 12개월간을 합산하여 산출함

- 운용자산이익률 = [A / { 평균자산(B) - A/2}]×100
  - ·A(투자수지) : 투자수익 - 투자비용
  - ·B(평균자산) : {직전 12개월말자산 + ∑(해당월전월까지 월말자산×2) + 해당월말자산} / 24

② 지표금리수익률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국고채」,「회사채」,「통화안정증권」,「양도성예금증서」수익률의 평균을 적용하며, 각 지표의 수익률은 직전 3개월 수익률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함

- 지표금리수익률 = (A1 + A2 + A3 + A4) / 4
  - ·A1 : 국고채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2 : 회사채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3 :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4 :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가중이동평균이율 = $\frac{Mi(-3) + Mi(-2)\times 2 + Mi(-1)\times 3}{6}$

Mi(-3)은 직전 3개월, Mi(-2)는 직전 2개월, Mi(-1)은 직전 1개월 이율

주) 1.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3년만기 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함
2.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함
3.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1년만기(364일) 통화안정증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함
4.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91일 양도성예금증서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함
5.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은 당사 인터넷홈페이지(www.samsungfire.com) 상품공시 적용이율 참조

0801-10902606-15564637

0801-10902606-15564637

독립특별약관

0801-10902606-15564637

0801-10902606-15564637

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납입)

①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거나 급여이체를 통하여 납입합니다.

② 제1회 기본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지정 금융기관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 금융기관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기본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기본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 또는 급여이체일자는 이 청약서에 기재된 기본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0801-10902606-15564637

0801-10902606-15564637